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1777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의자 : 김은혜 · 김미애 · 조승환
서천호 · 조지연 · 김승수
강승규 · 이성권 · 주진우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시 백서 및 상품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및 백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에 관한 사항과 상환을 위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의무, 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위원회의 보고 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0조).
- 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운영 실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1조).
- 바. 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보도록 함(안 제22조).
- 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감독 및 처분과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활용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 “디지털자산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분산원장 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4.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산원장”이란 디지털자산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6. “준비자산”이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이 법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디지털자산 발행잔액의 가치에 상응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또는 디지털자산업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명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제7조(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디지털자산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9. 그 밖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90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내용
 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⑦ 심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및 제5항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그 신청내용에 따른 인가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제9조(백서)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그 임원 및 핵심 인력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3.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4. 발행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5.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6. 발행 및 유통 구조에 관한 정보
7.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8. 상환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② 백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품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상품설명서(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를 백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품설명서에는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이용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품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백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이용자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백서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대표이사(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백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백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분석 의견을 기재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상환 의무)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된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자산에 연동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상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상환청구 요건 및 절차

2. 가치가 연동된 법정통화 또는 자산별 상환금액 산정 기준

3. 상환 소요 기간

4. 상환 제한 사유

5. 상환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 부과기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준비자산 구성 및 관리)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통화에 연동된 경우: 그 연동된 통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현금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다.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또는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통화가 아닌 자산에 연동된 경우: 해당 자산 또는 국내 통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현금

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다.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또는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매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는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이사(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진술과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준비자산은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상환청구에 대한 상환 재원으로 우선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⑧ 준비자산은 상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성 확보의무)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디지털자산 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자산 거래가 기록되는 분산원장(이하 “분산원장등”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7조(분산원장등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산원장등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발견된 취약점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제18조(침해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분산원장등을 공격하는 행위
2. 분산원장등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산원장등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분산원장등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행위

제19조(손해배상책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보안상 취약점으로 인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등)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분산원장등이 교란 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해당 디지털자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과 준비자산의 규모
2. 그 밖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운영실패 시 처리 및 조치권한)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분산원장등과 이에 수반되는 자동 조건 이행 장치의 장애, 전산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행 및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산원장등과 이에 수반되는 자동 조건 이행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행 및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실패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는 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청구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외국에서 발행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특례)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본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치고정형 가상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발행하였을 것
2. 디지털자산이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되었을 것
3. 디지털자산이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5장 감독 및 조치

제23조(감독 · 검사 및 처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로 본다.

제24조(승인 · 보고)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5. 그 밖에 이용자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가 변경된 때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6.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7.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 및 제2항의 보고의 기준·방법, 그 밖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한국은행의 권한)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영위하는 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6조(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12개월 이상 인가받은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의 기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라 부가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인가를 포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7.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백서, 상품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때

2. 백서, 상품설명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가치고정형 디
지털자산 발행업무를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등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